

2024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2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

▣ 회의일시 : 2024. 3. 14. (목), 14:00 ~ 18:00

▣ 검토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문 화 재 위 원 회

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

1.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0조에 따라,
 -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,
 -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,
 -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(법인의 상근·비상근 임직원 포함)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,
 -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,
 -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
 -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.
 -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.
2.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3. 아울러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4.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1 한국의 갯벌 2단계 확장등재 등재신청후보 선정 심의

【검토사항】

- 2 공주 신관동 주상복합 건설 관련 영향분석 소위원회 구성·운영 검토

【보고사항】

- 3 2024년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사업계획 수립 완료 보고

심 의 사 항

1. 한국의 갯벌 2단계 확장등재 등재신청후보 선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한국의 갯벌(2단계)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한국의 갯벌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결정 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(2026년)까지 유산구역 확대(9개 갯벌)를 권고 받았음
 - ※ 한국의 갯벌(1단계) 구성유산 : 서천 갯벌, 고창 갯벌, 신안 갯벌, 보성-순천 갯벌
- 이의 추진을 위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한국의 갯벌(2단계)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신청하였음
 - ※ 참고 :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예규) 제10조, 11조

다. 추진 경과

- 2단계 지자체 협의('21.6월/여수, 고흥, 무안)
-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2단계 관련 지자체 직원 파견 사전협의 실시('22.12월) 및 파견 완료('23.1월/5급 1명, 6급 3명)
- 2단계 추진 잠정목록 등록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('23.4월/원안가결)
 - *유산명칭: 한국의 갯벌 2단계(Getbol, Korean Tidal Flats(Extension))
 - *구성유산: 여수시, 무안군, 고흥군(전라남도)
- 정관변경 사항 재단 등기 완료('23. 5월)
- 한국의 갯벌 2단계 기초조사(갯벌 서식 물새 및 생물종) 사업 실시('23. 8 ~ 12월)
- 잠정목록 신청서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록('23.10월)
- 2단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
 - 무안갯벌 함해만(42km²) 습지보호지역 지정('01. 12월) 및 탄도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('24. 9월 예정)
 - 고흥갯벌(59.43km²) 습지보호지역 지정('22. 12월)
 - 여수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('24. 6월 예정)

라. 주요내용(세부내용은 심의자료 요약본 참조)

<유산구역 현황>

번호	구성요소	소재지/지역	신청유산 면적(ha)	완충구역 면적(ha)		
				육역	해역	소계
1	여수갯벌	여수시	4,060	638	1,206	1,844
2	고흥갯벌	고흥군	5,943	858	1,326	2,184
3	무안갯벌	무안군	11,984	1,374	1,484	2,858
총 면적(ha)			21,987	2,870	4,016	6,886

○ 유산구성 : 연속유산(여수갯벌, 고흥갯벌, 무안갯벌)

○ 등재기준의 타당성

- 등재기준 (X) :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서식지를 포함

신청유산은 황해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전 세계 3 대 주요 철새이동로 가운데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이동로 중 하나인 황해지역에서 국제 멸종위기철새종을 부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검 토 사 항

2. 공주 신관동 주상복합 건설 관련 영향분석 소위원회 구성·운영 검토

가. 제안사항

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(공주 공산성) 주변 주상복합 건설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을 부의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세계유산 영향분석 관련 전문적·효율적 심의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

다.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목 적 : 지속적·반복적으로 발생할 안전에 대한 전문적·효율적 심의 및 중요 안전에 대한 본위원회 심층 논의 시간 확보
- 심의사항 :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

<대상사업 개요>

- 사업명 :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8 주상복합 신축공사
- 대지위치 :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
- 지역지구 : 일반상업지역, 도시지역, 여객자동차터미널 저축, 종점경관관리구역
- 대지면적 : 17,000.20㎡, 연면적 : 205,965.0439㎡(지상135,692.3014㎡/지하70,272.7425㎡)
- 건축면적 : 10,703.5214㎡
- 용적률/건폐율 : 784.29%(법정: 800%이하) / 62.96%(법정: 80%이하)
- 세대수(규모)/구조 : 929세대(지하5층, 지상46층) / 철근콘크리트 구조

- 개최시기 : 안전에 따라 일정 조정
- 구 성 : 4명 이내
- 시 행 일 : 소위원회 구성·운영 확정 후

라. 관련법령

「문화재보호법」

제8조(문화재위원회의 설치) ①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.

1.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
3.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
5.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
6.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
7.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
8.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
9.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
10.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·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11.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

제8조(소위원회)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·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.

「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」

제6조(소위원회 운영) ①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.

마. 참고사항

- 사업시행자 별도설명자료(PPT) 첨부

보고 사항

3. 2024년 세계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완료 보고

가. 보고사항

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(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)에 따라 추진한 2024년 세계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 사업계획(이하 사업계획)을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내용

1) 그간의 추진경과

- ('23.10월) 사업계획 작성지침 배부 및 제출 요청(청→관리주체)
- ('23.12월~'24.3월) 관리주체별 사업계획(12건) 접수완료(관리주체→청)

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(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)

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2) 주요 포함사항 및 수립주체

- 주요 포함사항
 -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,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,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,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,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수립주체 : 문화재청장, 관할 시·도지사 등 12개 기관
 - 종묘 등 15개 세계유산 대상 2024년 사업계획 수립

3) 관리주체별 주요 사업계획: [별첨]

4) 향후계획

- ('24.3월) 2024년 사업계획 종합 통보(청→관리주체)
- ('24.4월) 유산별 관리주체 사업계획 홈페이지 등 공고